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중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호서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서대학교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3. 대성고등학교
4. 대성중학교
5. 호서대학교 부속유치원

제3조의2(법인 및 설치 학교 임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①이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임원과 교직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임원 및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의 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예산·결산의 공개)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그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계속비 및 익년도에 이월 사용분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 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 2 인

제18조의2(임원의 자격기준) 임원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학교발전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거나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인과 학교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년
2. 감사 :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원이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 법인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초래케 한 때
3. 이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20조의2(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 ①이사장은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 및 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2배수, 개방

감사는 단수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3(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호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대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삭제<2018.04.26.>

제22조(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이사장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2(상임이사 등) ①이사회 운영과 수익사업 경영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중 1인을 상근하는 이사(이하“상임이사”라 한다)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상임이사의 직무범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교원 임용권 중 일부는 총장에게 위임하며 위임 사항은 제37조 3항의 내용을 따른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상정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

외로 하고,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해당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미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주식투자 등 금융업
3. 임산·농업 및 과수원 영업
4. 건설 및 보수 용역업
5. 학원 운영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32조의2(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호서서초빌딩
2. 호서당산동빌딩
3. 호서천안빌딩
4. 호서아산빌딩
5. 호서두정빌딩

제32조의3(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2조의2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서서초빌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
2. 호서당산동빌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92
3. 호서천안빌딩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4
4. 호서아산빌딩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39-2
5. 호서두정빌딩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02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7조(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년이 남은 경우에 한해 퇴직일 익일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중등학교의 임기가 만료된 학교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임용령에 따른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1. 호서대학교 : 4년, 중임가능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2년, 중임가능
3. 대성중·고등학교 : 3년,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단,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호서대학교 부속유치원 : 4년, 중임가능

③대학 교육기관(이하“대학”이라 한다)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이하 강사)을 제외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강사 등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임용하되, 강사의 자격기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별도로 정한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신규채용,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재임용,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총장에게 위임하고, 총장은 위임된 임용권 행사 후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단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

나. 부교수·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중등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은 당해 학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처·실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밖에 교원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⑥중·고등학교의 교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그 밖에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복수의 교감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정된 자를 이사장이 보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총장과 학교의 장이 교원을 보직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임명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교과를 한 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제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7조의3(초빙교장의 임용) ①삭제<2013.08.29.>

②삭제<2013.08.29.>

제37조의4(정년) ①대학의 총장에 대하여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의 정년은 65세(유치원 및 중등학교 교원은 62세)로 하고,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대학의 경우 대내·외 인사 중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70세 까지로 할 수 있다.

제37조의5(겸임교원 등) ①대학에는 제37조 제3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중·고등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37조 제4항의 교원 이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중 산학겸임교사는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고, 기타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명예교사 및 강사 등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보수·임용기간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6(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8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7호 내지 제7-3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삭제<2015.04.23.>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5. 제38조 제6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8조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8조 제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한다.
10. 제38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삭제<2015.04.23.>

12. 제38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0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0조의 2(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를 준용한다.

제40조의 3(면직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8조 제1호 및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 기간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할을, 1년 초과 2년 이하에는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 공무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직위해제)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또한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제2항 제2호, 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제42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③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2(명예퇴직수당) ①이 법인이 설치한 중·고등학교의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의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기준·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인이 설치한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5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기준·지급액·지급결정·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인사 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대학은 제외한다.)
3. 정년보장 교수의 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중등학교 인사위원회 세칙의 심의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제청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대학의 경우, 학사부총장·교무처장(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행정처장으로 한다)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지명 및 교직원전체회의를 통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중등학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중등학교의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결위·출장 기타 사유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대리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등학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중등학교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 중에 임명한다)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단, 중등학교 인사위원회 시행세칙에 규정된 사항은

해당 세칙의 내용을 따른다.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학교별로 각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장이 아닌 교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대학에 두되, 총장은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징계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별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대학은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단,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다만,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중등교육기관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번 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frac{2}{3}$ 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수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frac{2}{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frac{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연구부정, 국가연구개발사업부정 및 입시비리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의 3(비밀누설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62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에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2 절 사무직원

제63조(자격) 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행정직원 · 특정직원 · 별정직원 · 기술직원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기술직원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4조(임용) ①사무직원의 신규채용 · 승진 · 승급 · 전직 · 전보 · 겸임 · 파견 · 강임 · 휴직 · 복직 · 직위해제 · 강등 · 정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공개채용 ·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방법 등에 의하여 행하되, 신규채용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시보기간을 둘 수 있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사무직원 임용권 중 신규채용,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총장에게 위임하고, 총장은 위임된 임용권 행사 후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근무기간 · 급여 · 근무조건 · 업적 및 성과 · 재계약 조건과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이하 “계약제 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고, 특정한 업무 또는 한 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직원 또는 별정직원으로 계약제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에 있어서 공개형식 전형과 실증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1항의 위임사항에 따른다.

⑤대학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제1항의 임용 사항 중 승급 · 전보 · 겸임 ·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총장이 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1항의 위임사항에 따른다.

⑥중등교육기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해 제1항의 임용 사항 중 근속승진 및 대우직원 선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며,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속승진 운영 지침」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대우선발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 조항을 준용한다.

제67조의2(명예퇴직) ① 제3조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직원의 명예퇴직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허가 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 지급액 · 지급결정 ·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1호와 제2호 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를 준용한다.

제6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와 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 관하여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단 대학(대학원대학교 제외)의 사무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대학에 두되(재심위원회는 제외), 총장은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징계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에 두는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대학은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단,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제 3 절 조 교

제68조의2(임용 등) ① 대학에 교육 ·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 조교의 구분 · 자격 · 정원 · 보수 · 복무 · 신분 보장 기타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교의 징계와 재심에 관한 사항은 사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69조(법인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법인팀과 감사팀을 두며, 사무국장은 부교수 이상 퇴직교원, 부참여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팀장은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 제7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대학교에 학사부총장·산학부총장·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참여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1조(대학원장 및 학장 등)** ①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두고,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다.
- ②대학원장과 학장·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③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각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하며,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2조(대학본부)** ①대학교에 기획처·교무처·학생처·입학처·교육혁신처·대외협력처·국제처·총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으로 교목실·비서실·법무실·**AIX추진본부**·학생군사교육단·생명윤리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건학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및 **앵커사업단**을 둔다.
- ② 제1항의 처·실에는 처·실장을 두고, 처·실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참사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단, 총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총장 직속기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비서실장, **AIX추진본부장**,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 건학50주년기념사업위원장 및 **앵커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2. 교목실장 및 법무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 ③ 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기업개발추진·해외교육사업 등 종합적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사업단 및 본부를 둘 수 있고, 각 사업단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사업단장 및 본

부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장 및 부총장을 보좌한다.

④ 학사부총장 직속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인권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처장·실장·사업단장·본부장 및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부실장·부분부장·부센터장 또는 팀장을, 각 처·실에는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부실장·부분부장·부센터장과 전문연구원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주사 이상 직원으로, 팀장은 주사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대학원 및 대학) ①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개의 대학원을 통합한 교학팀을 둘 수 있고, 팀장은 주사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② 단과대학의 학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③ 팀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업무·재산과 회계·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학교기업의 설치와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의3(협력연구소) ① 이사장은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산업체 등에게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산업체 등은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설정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을 대학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4조(부속기관 등) ① 대학교에 필요에 따라 두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이하“부속기관 등”이라 한다) 및 위원회 등의 설치와 조직의 구성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속기관 등에 장을 두며, 부속기관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을 따르며, 평생교육원장은 5년 이상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를 축탁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절 대학원대학교

제75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대학본부) ①대학교에 교학처, 연구처 및 행정처를 두고,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교목실을 둔다.

②제1항의 처·실에는 처·실장을 두고, 처·실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행정처장은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처·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고, 팀장은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 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대학교에 두는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업무·재산과 회계·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2(협력연구소) 대학교에 두는 협력연구소의 설치방법 계약조건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부속기관 등) 대학교에 두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및 위원회 등의 설치와 조직의 구성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대학평의위원회

제78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8조의3(평의위원회의 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서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학생 2인

라. 동문 1인

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바. 조교 1인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가. 교원 3인
- 나. 직원 2인
- 다. 학생 1인
- 라. 동문 1인
- 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제78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5. 기타 평의원의 위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8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평의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8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평의원은 제78조의3 각 호의 구성단위로부터 퇴직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임기는 종료된다.
- ③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8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8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0조(하부조직) ①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며, 보직교사는 주임교사로 보하고, 그 보직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교장이 정한다.

②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절 중 학 교

제81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하부조직) ①중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며, 보직교사는 주임교사로 보하고, 그 보직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교장이 정한다.

②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절 유 치 원

제83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원아를 보육한다.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3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정 원

제84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4·별표 5·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8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6조(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출마자 없이 무기명 투표로 2배수의 후보를 선출하여 추천된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의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9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학교인사에 관여 할 수 없고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 도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제89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4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91조(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

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⑥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일지라도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및 정관 제9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93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삭제<2013.11.26.>

제9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제96조(위원회의 구성)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제97조(위원장)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제98조(위원의 의무)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④삭제<2013.11.26.>

제99조(분쟁조정 신청) 삭제<2013.11.26.>

제100조(회의개최 등)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제10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제102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삭제<2013.11.26.>

②삭제<2013.11.26.>

③삭제<2013.11.26.>

④삭제<2013.11.26.>

⑤삭제<2013.11.26.>

제103조(간사) 삭제<2013.11.26.>

제104조(준용) 삭제<2013.11.26.>

제105조(위임규정) 삭제<2013.11.26.>

제 10 장 보 칙

제10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0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8조(합병당시의 임원) 본 법인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유지법인인 학교법인 이석학원과 합병 당시(2005년 3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정진경	이 사 조용기
이 사 강석규	이 사 이영덕
이 사 서영훈	이 사 정근모
이 사 김중기	이 사 이원규
이 사 김낙형	이 사 강철구
이 사 강권석	
감 사 송광현	감 사 박상기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 제외)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인사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4.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호서대학 소속 교직원들은 이 정관에 의한 호서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호서 대학교 재직 중인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이석학원의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 호서학원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이석학원의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 호서학원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계약제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와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초빙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초빙교장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7조, 제37조의5의 시행은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와 제14조의 2, 제147조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인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4조, 제46조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처리 진행 중인 대학교원의 임용, 재임용 및 징계관련 위임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처리 진행 중인 대학교원의 임용, 재임용 및 징계관련 위임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처리 진행 중인 대학 사무직원의 징계관련 위임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중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7조 제2항의 변경사항은 새로 선임되는 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총	계	12명
행 정 직 원	계	7명
2 급 (참 여) 또는 3 급 (부참여)		
4 급 (참 사)		
5 급 (부참사)		
6 급 (주 사)		
7 급 (부주사)		
8 급 (서 기)		
9 급 (부서기)		
특 정 직 원	계	1명
기 술 직 원	계	2명
별 정 직		
고 용 원	계	2명

<별 표 2> 호서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126명
행정직원A / 기술직원A	계	110명
2 급 (참 여)		
3 급 (부 참 여)		
4 급 (참 사)		
5 급 (부 참 사)		
6 급 (주 사)		
7 급 (부 주 사)		
8 급 (서 기)		
9 급 (부 서 기)		
별정직원	계	2명
행정직원B / 기술직원 B	계	14명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별 표 3>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13명
행정직원	계	9명
별정직원	계	2명
기술직원	계	2명
기술직 A		1명
기술직 B		1명

<별 표 4> 대성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8명
행정직원	계	8명
5 급 (부 참 사)		1명
7 급 (부 주 사)		3명
9 급 (부 서 기)		4명

<별 표 5> 대성중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6명
행정직원	계	6명
6 급 (주 사)		1명
8 급 (서 기)		2명
9 급 (부 서 기)		3명

<별 표 6> 호서대학교 부속유치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6명
행정직원	계	6명
7 급 (부 주 사)		1명
8 급 (서 기)		1명
9 급 (부 서 기)		4명